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 차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 활력의 제고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p.1
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p.2
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p.3
④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신고 기간 연장	p.4
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	p.5
⑥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p.6
①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	p.7
⑧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p.8
⑨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p.9
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p.10
⑪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	p.11
1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p.12
13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	p.13
FTA 활용 적극 지원으로 수출입업체의 납세부담 완화	
14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	p.14
1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	p.15
16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p.16
1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	p.17
18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확대	p.18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19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p.19
②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p.20
의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p.21
②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	p.22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p.23
24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	p.2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 질서 확립		
四 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 확대	p.25	
26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	p.26	
②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	p.27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p.28	
ഈ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p.29	
30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p.30	
③1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	p.31	
32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	p.32	

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u>중소·중견기업의</u>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 <u>< 신 설 ></u>	 다만,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 <u>< 신 설 ></u>	□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u>일부 위탁 가능</u>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함

- (기대효과)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
- (시행일) '20. 7. 1.(「관세법」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

②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51)

중 전 달라지는 내용 □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로 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 (기대효과) 관세법에 규정된 모든 물품검사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시행일) '20. 1. 1.(「관세법」제246조의2 개정)

③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u>확대</u>
•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	• < 좌 동 >
영인과 다를 경우	
• <u>< 신 설 ></u>	• 검사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 (기대효과)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수수료 폐지로 인한 수출기업 지원
- (**시행일**) '20. 4. 1.(「관세법」제247조 개정)

④ 잠정수출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추가 및 가격확정 신고 기간 연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 잠정수출신고 대상 물품 <u>추가</u>
1. 가스	• < 좌 동 >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u>< 신 설 ></u>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 가격 확정 신고기간	□ 가격 확정 신고기간 <u>연장</u>
• 적재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 적재완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지원 및 수출정정 부담 완화
- (시행일) '19. 12. 3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개정

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삭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요건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u>신고 요건 삭제</u>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함 	• <u>< 삭 제 ></u>

-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활성화
- (시행일) '19. 12. 3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삭제

⑤ 중소ㆍ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 감면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u>< 신 설 ></u>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 중소·중견 보세공장이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 (기대효과) 중소·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이용률 제고 및 가공무역 지원
- (시행일) '20. 4. 1.(「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 적용기한: '22. 12. 31. 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①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의 특정물품 면세대상 추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특정물품 면세대상	□ 특정물품 면세대상 <u>확대</u>
• <u>< 신 설 ></u>	•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 추가
	*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대효과**) 보석 가공 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
- (**시행일**) '20. 4. 1.(「관세법」제93조제18호 신설)

图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면제 <u>기한 연장</u>
•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 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관세 면제	• < 좌 동 >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이상인 금	
● 적용기한 : '19. 12. 31.	• 적용기한 : '21. 12. 31.

- (기대효과)금 밀수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
- (시행일) '20.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7 개정)

⑨ 해저광물자원개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면제 기한 연장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 < 좌 동 >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 ● < 좌 동 > 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 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 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19. 12. 31. • 적용기한 : '22. 12. 31.

- (기대효과) 적극적인 국내대륙붕 개발을 통해 석유 및 석유가스 자급 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도모
- (시행일) '20. 1. 1.(「조세특례제한법」제140조 개정)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통관기획과, 042-481-7856)

중 전 달라지는 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 대한 관세경감 기한 연장

•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 적용기한 : '19. 12. 31.

- (기대효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의 조세부담을 경감
- (**시행일**) '20. 1. 1.(「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개정)

🗓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율 변경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맥주・탁주 과세표준◆ 수입신고 <u>가격</u>	□ 맥주・탁주 과세표준 <u>변경</u>◆ 수입신고 <u>수량</u>
□ 맥주・탁주 세율● 탁주 : 5%● 맥주 : 72%	 □ 맥주・탁주 세율 <u>변경</u> ● 탁주 : <u>41.7원 / 리터</u> ● 맥주 : <u>830.3원 / 리터</u>
□ <u>< 신 설 ></u>	 ☑ 생맥주 세율 경감 ● (대상)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 ● (세율) 664.2원 / 리터
	* 맥주 세율의 20% 경감 ● (적용기한) '20. 1. 1. ~ '21. 12. 31.

- (기대효과)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일) '20. 1. 1 시행(「주세법」 제21조 및 제22조 개정)

1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	□ 지원요건 <u>연장</u>
• '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	• <u>'09.12.31.</u>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
된 노후 경유차를 '18.6.30. 현재	된 노후 자동차 를 <u>'19.6.30.</u>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 노후 <u>자동차</u>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
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규로 숭용차 <u>(경유차 제외)</u> 를 구
	입하여 등록
□ 세제혜택	□ 세제혜택
•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 < 좌 동 >
(한도 143만원 *)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노후 <u>자동차</u> 1대당 신차 1대 지원
□ 시행기간: '19. 1. 1.~'19. 12. 31.	□ 시행기간: '20. 1. 1.~'20. 6. 30.

- (기대효과)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
- (시행일) '20. 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개정) ※ '20. 1. 1.~ 6. 30.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13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환원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탄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력세율 적용	탄력세율 적용기한 만료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3.5%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 <u>5%</u>

- (기대효과)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의 환원
- (**시행일**) '20. 1. 1.(「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14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 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의 세율을 우선 적용	□ < 좌 동 >
• 다만,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 긴급·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	• 다만,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 긴급·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u>공중도덕 보호</u> 등을 위한 조정관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
□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	□ < 좌 동 >
• <u>< 신 설 ></u>	• 다만, <u>협정관세의 세율이 「관</u> 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 정관세의 세율을 적용

- (기대효과) 조정관세의 실효성 강화 및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선택권 보장
- (시행일) '20. 1.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 개정)

15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	□ < 좌 동 >
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 <u>< 신 설 ></u>	• 다만, <u>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u>
	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 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u>3개월</u>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 신청을 허용

- (기대효과)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
- (시행일) '20. 4.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개정)

16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좆 달라지는 내용 젉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부족**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액정 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를 액정정·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하여야 하며, 세액이 과다한 것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정청 구 또는 세액정정을 할 수 있음 □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 경정청구 및 납세신고세액 과다시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폐지

- (기대효과) 납세자의 FTA 협정세율 적용 권리구제
- (시행일) '20. 1.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6조 개정)

1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명확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 < 좌 동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	
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u>신청하여 발급</u> 받았거나 작성·발	<u>다르게 신청하여 발급</u> 받았거나
급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발급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대효과)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으로 법적 혼선 방지
- (시행일) '20. 1.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4조 개정)

18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행한	□ < 좌 동 >
품질 인증서 등을 관세청장이 원산지	
(포괄)확인서로 인정	
• 6개 기관이 품질 인증한 1,146개	• < 좌 동 >
품목의 생산자는 원산지(포괄)확인	
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품목	
에 대해 발행된 15종의 인증서를	
수출자에게 제공시 원산지(포괄)확	
인서로 인정	
• <u>< 신 설 ></u>	•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원산지상품으로
	확인한 품목 및 이에 대한 인증서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추가 인정
	- 발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인정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 품목 : 47개 제주 지역특산품

- (기대효과) 지역특산품의 FTA 활용 수출 증대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후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서식16 신설

19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심사정책과, 042-481-781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u>< 신 설 ></u>	 납세자보호관 신설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단, 세관공무원 및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외 (직무)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총괄 및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설치) 관세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설치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심의대상) ^①관세조사범위 확대, ^②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지중지 또는 중지 요청 등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중지 요청 등 불복절차 (설치) 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 (시행일) '20. 7. 1.(「관세법」 제118조의2 ~ 제118조의5 신설)

20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조사총괄과, 042-481-79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C < 신 설 >	□ 통고처분 면제 근거 신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고처분 면제 가능
	 ● 면제 대상 - 1), 2) 모두 충족 1) 벌금 해당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몰수품 가액과 추징금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기대효과)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는 관세범인의 부담을 경감
- (**시행일**) '20. 1. 1.(「관세법」제311조 개정)

2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u>< 신 설 ></u>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 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

- ㅇ (기대효과) 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
- (시행일) '20. 7. 1.(「관세법」제196조 개정)

② 국제경기대회 물품의 재수입 면세대상 추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재수입 면세대상	□ 재수입 면세대상 <u>추가</u>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 	• < 좌 동 >
• <u>< 신 설 ></u>	• <u>국제경기대회</u>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물품

- (기대효과) 국제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운동관련 물품 등에 대해 재수입 면세를 함으로써 원활한 국제경기 대회 및 행사 지원
- (**시행일**) '20. 4. 1.(「관세법」제99조 개정)

23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① <u>지연이자 성격(@+ⓒ)은 통합</u>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1일 0.025%	납부일) × 1일 0.025%
 ● (납부고지 후 : 가산금) ─ (미납세액 × 3%)(ⓑ) ─ + 매 1개월마다 월 0.75%(ⓒ) 	② 체납에 대한 재재(ⓑ)는 유지 - 미납세액 × 3%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이미 개 정('18.12.31)됨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 (기대효과)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납세협력 기대
- (시행일) '20. 1. 1(「관세법」제41조 삭제, 제42조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6조 개정)
 ※ 이 법 시행 전 납세신고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24 수정신고 및 보정신청 시 포괄신고 대상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1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고세액 변경 방법	□ 신고세액 변경 방법 <u>간소화</u>
• 원 칙	• < 좌 동 >
- 대 상 : 수정신고, 보정신청	
- 최초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	
장에게 각각 변경신고	
• 예 외 : 포괄신고 가능	• 예 외 : 포괄신고 가능
- 대상 : 수정신고	- 대상 : 수정신고, <u>보정신청</u>
- 통관지 세관 수개 인 경우, 어느	- < 좌 동 >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변경신고	
- <u>< 신 설 ></u>	-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
	신청ㆍ수정 신고하는 경우, 정산
	담당 세관에 일괄 변경신고 허용

- (기대효과)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부 편의 제고
- (시행일) '19. 12. 26.(「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개정)

② 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 추징 대상 확대

(조사총괄과, 042-481-7911 /국제조사팀, 02-510-163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밀수출입에 대한 몰수·추징	□ 밀수출입 대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 필수적 몰수·추징 대상	● 필수적 몰수·추징 대상(<u>예비범 포함</u>)
- 수출입 금지물품의 밀수출입한 자	
(소유·점유 무관)	
- 물품을 미신고 수입한 자	< 좌 동 >
- 물품을 허위신고로 수입한 자	
- 밀수품을 취득한 자	
•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	•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 확대
- 미신고·허위신고 <u>수입물품</u> 중 해당물품	- 미신고·허위신고 <u>수출입물품</u> 중 해당물품
•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후 반입한 외국물품	
•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의 장	< 좌 동 >
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 <u>< 신 설 ></u>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 그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

- (기대효과)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적 차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 당하는 불합리함 개선
- (**시행일**) '20. 1. 1.(「관세법」제282조 개정)

26 구매대행자 연대납세의무부과 및 위반시 관세포탈죄 적용

(조사총괄과, 042-481-79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	□ 관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u>구매대행</u> 업자 추가
•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 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 <u>< 신 설 ></u>	- < 좌 동 > - <u>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u>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 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
□ 관세포탈죄 대상	□ 관세포탈죄 대상에 <u>구매대행업자 추가</u>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
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수입한 자
	(화주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세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자
	<u>포함)</u>

- (기대효과) 해외직구 시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등 관세탈루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강화 및 소비자 권리보호 기여
- (시행일) '20. 4. 1.(「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 개정)

27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u><신 설></u>	□ <u>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신설</u>
	• (대 상자) 관세청장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자에
	대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
	<감치 신청 요건>
	① 관세(내국세 포함) 3회 이상 체납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 합계 체납금액 2억원 이상
	②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
	• (감치 신청 이후 절차)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를 결정
	위원회 →
	• (기본권 보호 조치)
	-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 불가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19.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에 따라 「국세징수법」및「관세법」개정

- (기대효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시행일) '20. 1. 1 시행(「관세법」제116조의4 신설) ※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28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고시로	□ <u>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u>
은 용	<u>입법</u>
*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 물품을	•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
	•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
	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
□ <u>< 신 설 ></u>	□ 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
	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
	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기대효과) 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 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
- (시행일) '20. 7. 1.(「관세법」제196조의2 신설) '21. 1. 1.(「관세법」제277조 개정)

29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u>대상</u>
	<u>추가</u>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 < 좌 동 >
HS 87류 중고차	
• <u>< 신 설 ></u>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호 품목)
	<u>및 생활 폐기물 등(HS 3825호 품목)</u>

- (기대효과) 폐플라스틱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 (**시행일**) '19. 12. 3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개정

③ 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통관기획과, 042-481-7841)

종 정 달라지는 내용 □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를** 대하여만 안전성 검사 실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 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 승인 ·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 승 인 ·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 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신 설 > ☐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인천협업검사센터('16.1~), 부산협업검사센터('20. 상반기 예정)

- (기대효과) 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
- (**시행일**) '20. 7. 1.(「관세법」제246조의3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산정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에	□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산정
사용하는 매출액 기준	기준 구체화·명확화
● 보세판매장의 <u>매장별 매출액</u> *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 * 세관신고 매출액	• <u>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u> <u>매출액</u> 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 적용

- (기대효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기준 명확성 확보
- (**시행일**) '20. 1. 1.(「관세법」제176조의2 개정)

③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신설

(특수통관과, 042-481-78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 보세운송업자등에 <u>구매대행업체 추가</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등")는 관세청 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보세운송업자	
-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화물운송업자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좌 동 >
외국무역선 등에 선용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외국무역선 등에 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u>< 신 설 ></u>	- <u>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자</u>

- (기대효과)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는 제도 마련
- (**시행일**) '21. 7. 1.(「관세법」제222조 개정)